

#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2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제정 목적(안 제1조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### 나. 위원 구성 및 임기(안 제2조 및 안 제4조)

- 위원장 군수
-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, 한차례 연임

### 다.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(안 제3조)

### 라. 위원장 의 직무 및 회의 운영 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 2015. 9. 23. ~ 10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실시 : 원안동의

##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법 시행령(제2호에서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2.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위촉해제)**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
2.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

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3.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

4.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
5.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

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·장소, 출석위원 직·성명, 심의안건·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.

**제8조(의결사항의 처리)**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9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간사)**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장애인관련 담당주사가 된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

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 
**제12조(운영규정)**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조례 제5조(경비 지원)

-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의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

## 4. 작성자

작성자	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
연락처	(033) 330 - 2150

## 관 련 법 령 발 취

### <장애인복지법>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 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<장애인복지법 시행령>

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 위원회(이하 "지방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